

전자민원처리공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제출하신 처리내역입니다.

고객님의 궁금증과 문제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1.민원내용

민원요지 대수선에서의 다가구주택의 범위

접수번호 1AA-0908-099380

접수일자 2009.08.11

질의내용

대수선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항에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 내의 다가구주택만을 의미하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1가구(또는 1세대)만 사는 단독주택(의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허가없이 경계벽을 증설하여 10가구(또는 10세대)로 늘려도 무단대수선의 범위에 들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10가구(또는 10세대)로 허가를 받은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을 경계벽(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해체하여 1가구(또는 1세대)만 사는 단독주택으로 바꾸기 위해선 대수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서로 모순이 되는 게 아닌가요? 1.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8항의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만을 의미하는 건지, 2. 1가구(또는 1세대)가 사는 단독주택을 무단으로 경계벽을 증설하여 가구수를 늘렸을 경우,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으로 봐서 대수선규정에 어긋났다고 볼 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해양부 > 국토정책국 > 도시정책관 > 건축기획과

담당자 민경철

전화번호 044-201-4897

회신내용 귀하의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소관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 등에 대하여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해설명 등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을 말하며, 1가구(세대)가 사는 단독주택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했을 경우는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